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58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강준현 · 이재관 · 오세희
이강일 · 박민규 · 한민수
박상혁 · 황명선 · 박홍배
송옥주 · 민병덕 · 소병훈
이훈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까지”를 “제29조까지,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5조제2호 중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를 “제

31조제4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 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 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 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 ----- ----- ----- ----- -----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u>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 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u>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 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u>제29 조까지</u>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 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 ----- ----- ----- <u>제29 조까지, 제31조제4항</u> ----- ----- ----- ----- -----

있다. 1. ~ 8. (생략) ②·③ (생략) 제38조(과징금)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편입되지 아니한 특수관계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⑤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31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4항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제125조(벌칙) ----- -----
--	--

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u>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u>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 -----.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u> --- ----- ----- ----- -- 3. ~ 7. (현행과 같음)
--	---